2022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00-8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2. 5. 23. ~ 5. 27.

건축종별	[○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식회사 흥부
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		
	지 번	1600-8	관련지번	
	대지면적	2,291.5 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	일반상업지역,지구단위계획구역
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352.23 ㎡	건폐율	59.01 %	층수 지하 : 1층 / 지상 : 6층
	주 용 도	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30.95 m	용적률	315.5 %	연면적 합계 9,185.91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계 획)분야	○ 실시 설계 진행 시 외장 재료의 모듈과 창호의 모듈을 맞추어 가능한 전체적으로 정리된 입면 계획(권장사항) 외장모듈(1 또는 1/2등 정리하여 계획) ○ 소화용수가 콘크리트 저수조에 저장되고 평소에 쓰이지 않는 고여있는 형태의 물이 되니 물의 오염에 의해서 스프링클러의 헤드 등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유지관리 시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므로 유지관리 계획서에 명기바람.
	(소 방)분야	-
	(공 통)분야	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제시조건과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 인·허가 신청 시 반영할 것.
	참고사항	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6조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대상 아님. -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 및 학교설립 예정지가 위치하지 않음. - 학생 수용(배치)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(학교설립과)과 협의 필요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**[○] 조건부 의결**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022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-21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2. 5. 23. ~ 5. 27.

건축종별	[○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김일섭
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		
	지 번	167-21	관련지번	
	대지면적	1,260.7 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	일반상업지역,지구단위계획구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43.97 ㎡	건폐율 59.01 %	층수 지하 : 3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업무시설(오피스텔), 제2종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조, 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34.6 m	용적률 399.66 %	연면적 합계 7,996.16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계 획)분야	○ 1층 외부에 노출된 화장실의 경우 냉난방 설치 고려(권장사항) ○ 주차차단기 위치 조정 고려(경사면이 아닌 평탄한 곳으로 이동) ○ 소화용수가 콘크리트 저수조에 저장되고 평소에 쓰이지 않는 고여있는 형태의 물이 되니 물의 오염에 의해서 스프링클러의 헤드 등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유지관리 시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므로 유지관리 계획서에 명기바람.
	(소 방)분야	○ 지하층 전기차 주차구역은 일정단위별 격리 벽체(3면 구획)을 설치할 것.
	(공 통)분야	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제시조건과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 인·허가 신청 시 반영할 것.
	참고사항	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**[○] 조건부 의결**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